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94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 고 1. C
2. D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E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59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무거동 지상 건물 지하층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C은 2013. 7. 9. 피고 D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이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다중이용업소 용,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13. 7. 9.부터 2014. 7. 9.까지

○ 보장사항(보장조건 및 금액): 화재폭발대인 인당 보상한도 금 1억 원

화재폭발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금 1억 원

○ 시설물 소재지: 울산 남구 무거동 지하 F노래연습장

나. 그런데 2013. 10. 21. 09:44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번 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에 의한 연기와 그을음이 위 건물 계단과 승강기 통로 등을 타고 위 건물 4층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F DVD' 영화관 실내로 들어왔고, 원고는 이로써 위 영화관 내 시설물 전체에 그을음이 묻거나 연기 냄새가 배어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3. 10. 21. 02:30경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퇴근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영화관의 인테리어 비용 36,160,000원 및 집기류 교체 비용 51,432,530원 합계 87,592,53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는 피보험자인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위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한 책임도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참조), 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는 노래반주기 등의 전기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선이 많이 설치되어 전기 합선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마지막으로 나간 5번 룸의 노래반주기 부근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피고 C이 발화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방대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 5번 룸의 안쪽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부분이 소훼가 가장 심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실, 경찰 조사에서 피고 C의 아들인 G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02: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번 룸에서 손님들이 나가자 거의 같은 시각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면서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냉장고 등은 전원을 차단하지는 않았고, 전기 합선 등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자는 이 사건 화재를 처음 목격한 당시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하여 방화 및 실화 등 범죄로 인한 화재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타다 남은 선풍기와 배선, 멀티탭과 이음 배선 등 배선의 잔해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들 잔해에서 발화와 연관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배선 잔해에 이 사건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합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위 노래반주기 부근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외부적인 발화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화재가 전기 합선 기타 전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G의 퇴근 시각으로부터 7시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퇴근시에 존재하던 어떠한 발화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G이 퇴근할 당시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G이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보험금지급채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와 인과 관계 있는 피고 C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D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엽

판사 우정민

판사 정우철